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180

발의연월일: 2024. 9. 23.

발 의 자:황 희·이기헌·한민수

박 정ㆍ이병진ㆍ어기구

이용선 · 이학영 · 이연희

문진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페달 오조작 또는 급발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장치 장착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음.

그런데 서울시청 앞 사고로 인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고,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이 늘면서 안전대책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해외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첨단운전보조장치를 장착하도록 하여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고 있음. 이 중 효과적인 장치로 페달오조작방지장치가 주목받고 있는데, 일본은 2025년 6월부터 신차에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부착을 의무화하였으며 UN의 자동/자율주행 및 차량실무그룹(United Nations' Working Party on Automated/Autonomous and Connected Vehicles)은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가속을 예방할 수있는 제동 시스템(Acceleration Control for Pedal Error systems) 도입에 대한 규제 조항을 2024년에 채택한 바 있음.

이에 우리나라도 페달오조작방지장치의 장착을 의무화하여 자동차 및 교통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4 신설 등).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페달오조작방지장치"란 자동차 전방과 후방의 장애물을 감지한 상황에서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잘못 조작하여 자동차가 급가속되는 경우 자동으로 제동장치를 작동시켜 충돌을 방지하는 장치또는 기능을 말한다.

제2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9조의4(페달오조작방지장치의 장착 및 정보제공) ① 자동차제작· 판매자등은 차종, 용도, 승차인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에 따른 자동차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페달오조작 방지장치를 장착하여야 한다.
 - ②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 제1항에 따라 페달오조작방지장치가 장착된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페달오조작방지장치가 장착되어 있음을 구매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페달오조작방지장치의 장착기준, 장착사실의 통지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79조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의2. 제29조의4제1항을 위반한 자동차제작·판매자등(판매위탁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 4의3. 제2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페달오조작방지장치가 장착되어 있음을 구매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페달오조작방지장치의 장착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하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u> <신 설></u>	10의2. "페달오조작방지장치"란
	자동차 전방과 후방의 장애물
	을 감지한 상황에서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잘못 조작하여 자
	동차가 급가속되는 경우 자동
	으로 제동장치를 작동시켜 충
	돌을 방지하는 장치 또는 기
	능을 말한다.
11. ~ 14. (생 략)	11. ~ 14. (현행과 같음)
<u><신 설></u>	제29조의4(페달오조작방지장치의
	장착 및 정보제공) ① 자동차
	제작·판매자등은 차종, 용도,
	승차인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자동차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페달오조작방지장치를 장
	<u>착하여야 한다.</u>
	②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 제
	1항에 따라 페달오조작방지장
	치가 장착된 자동차를 판매하

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저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4. (생 략) <u><신 설></u>

<u><신 설></u>

5. ~ 19. (생 략)

는 경우에는 페달오조작방지장
치가 장착되어 있음을 구매자
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페
달오조작방지장치의 장착기준,
장착사실의 통지 등 필요한 사
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세79조(벌칙)
<u>.</u>
1. ~ 4. (현행과 같음)
4의2. 제29조의4제1항을 위반한
자동차제작 · 판매자등(판매위
탁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4의3. 제29조의4제2항을 위반하
여 페달오조작방지장치가 장
착되어 있음을 구매자에게 알
리지 아니한 자

5. ~ 19. (현행과 같음)